

##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|      |     |      |    |
|------|-----|------|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 즉시 |
|------|-----|------|----|

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신청인 |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 | ② 사업자등록번호 |
|       | ③ 대표자 성명      | ④ 생년월일    |
|       |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|           |
|       | (전화번호 : )     |           |

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② 과세연도 | 년 월 일부터 | 년 월 일까지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
|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|--|
| ③ 공제세액 계 (=④+⑤) |  |
|-----------------|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④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(= ⑧ + ⑨)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1. 기본공제금액 (=⑧)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⑧            |
| 법인 구분          | 지역 구분         | ⑥ 투자금액 | ⑦ 공제율 | ⑧ 공제세액(=⑥×⑦) |
| 중소기업           |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|        | 3%    |              |
| 중견기업           | 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 |        | 1%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수도권 밖         |        | 2%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-|
| 2. 추가공제금액(⑫와 ⑳ 중 작은 수) |  |  |  | ⑨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-|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1)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| 법인 구분            | 지역 구분         | 서비스업 여부 | ⑩ 투자금액 | ⑪ 공제율  | ⑫ 공제세액(=⑩×⑪) |
| 중소기업             | 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 | 여       |        | 7%(5%)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부       |        | 6%(4%)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수도권 밖         | 여       |        | 8%(6%)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부       |        | 7%(5%)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| 중견기업             | 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 | 여       |        | 6%(5%)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부       |        | 5%(4%)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수도권 밖         | 여       |        | 7%(6%)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부       |        | 6%(5%)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| 일반기업             | 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 | 여       |        | 4%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부       |        | 3%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수도권 밖         | 여       |        | 5%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부       |        | 4%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
| 2) 상시근로자 수 계산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 | 해당(직전)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⑬<br>합계 | ⑭<br>개월수 | ⑮ 상시<br>근로자수<br>(=⑬ ÷ ⑭) |
|               |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| 월 | 월 | 월 | 월 | 월 | 월 | 월 | 월 | 월 | 월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당 과세연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직전 과세연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3)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고<br>용<br>증<br>가<br>인<br>원<br>에<br>따<br>른<br>공<br>제<br>한<br>도 | ⑯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⑰ 1명당<br>공제금액              | ⑱ 공제한도 (=⑯×⑰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⑲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⑳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㉑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<br>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(다만, ㉑≤⑲-⑳)          |  | 2천만원<br>(중소기업은<br>2천5백만원)  | ㉒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㉒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<br>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(다만, ㉒≤⑲<br>-⑳-㉑) |  | 1천 5백만원<br>(중소기업은<br>2천만원) | ㉓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㉓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(= ⑲-⑳-㉑-㉒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천만원<br>(중소기업은<br>1천5백만원)  | ㉔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②7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(=④3) |    |
| ②8 추가공제한도 계(=②4+②5+②6-②7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※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(①2-②8와 0 중 큰 수)        | ②9 |

**⑤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**

| 고<br>용<br>증<br>가<br>인<br>원<br>에<br>따<br>른<br>공<br>제<br>한<br>도 | ③0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③1 1명당<br>공제금액             | ③2 공제한도 (=③0×③1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3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4 다음 ㉠~㉢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㉠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㉡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㉢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(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)의 상시근로자 수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5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<br>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(다만, ③5≤③3-③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2천만원<br>(중소기업은<br>2천5백만원)  | ③8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6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<br>년, 장애인,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(다만, ③6≤③3-③4-<br>③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천 5백만원<br>(중소기업은<br>2천만원) | ③9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7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<br>(= ③3-③4-③5-③6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천만원<br>(중소기업은<br>1천5백만원)  | ④0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1 이월공제 한도 계 (= ③8+③9+④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2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<br>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3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(④1과 ④2 중 작은 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**⑥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**

| ④4 과세연도 | 발생액     |        |      | 감소 내용   |          |      | 잔액      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        | ④5 미공제분 | ④6 납부분 | ④7 계 | ④8 기공제액 | ④9 당기공제액 | ⑤0 계 | ⑤1 기한 내 | ⑤2 기한 경과 | ⑤3 계 |
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합 계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|

**⑦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**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⑤4 추가공제(이월공제 포함)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⑤5 상시근로자 수가 ⑤4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⑤6 상시근로자 수가 ⑤4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<br>도의 상시근로자 수 |  |
| ⑤7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[(⑤4-⑤5) + (⑤5-⑤6)]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⑤8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(⑤7×1천만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⑤9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(이월공제세액 포함)의 합계액                   |  |
| ⑥0 납부 세액(⑤8과 ⑤9 중 작은 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제1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## 작성 방법

1.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.5명으로 계산하되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.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,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2.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용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3. ⑧란의 공제세액은 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,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, 해당 금액이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.
4. ⑪ () 공제율은 2017.4.17. 까지 투자분에 적용합니다.
5. ⑬란의 합계는 해당(직전)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.
6. ⑭란의 개월수는 해당(직전)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.
7. ⑳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,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(⑨)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(㉑)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.
8. ㉒란의 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,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(⑨)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(㉑)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(㉒)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.
9. "㉓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"란은 "㉔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"란에 옮겨 적습니다.
10. "※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"은 해당 과세연도의 "㉕ 미공제분"란에 옮겨 적습니다.
11. ㉖란의 "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"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,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(㉓)에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(㉗)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.
12. ㉘란의 "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"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(㉖)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,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(㉓)에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(㉗)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(㉖)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.
13. ㉙란부터 ㉚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.
14. "㉛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"란의 금액은 "㉜ 계"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.
15. "㉝ 납부분"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(고용 감소로 인하여 ㉙란부터 ㉚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)을 말합니다.